

「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건축된 어울림 체육센터를 동센터의 부속된 시설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센터의 세부시설의 내용 개정(안 제4조 별표1)

시설명	세부시설	면적	위치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	○ 복지센터 -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프로그램실, 창고 등	1,426.78㎡	평창군 진부면 진벌1길 144-19
	○ 어울림 체육센터 - 경기장, 다목적실, 주방 등	498.99㎡	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

- 사용허가 및 신청내용 일부 개정(안 제8조 제2항, 제3항)

- 어울림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9조 제2항 별표 2)
-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(안 제9조 제4항 별표3)
- 일부 문구의 명확화 및 오류 개정(안 제11조 제1항,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- 본 조례안은
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을 주소로 “어울림 체육센터”가 새로
 건축되면서 인근 “장애인복지센터”의 부속된시설로 운영 필요성이 있어
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세부시설내용을 별표1을 통하여 명시
 안 제8조에서는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시 “10일 전 신청”,
 “7일 전 변경 신청” 등 신청 기한을 삭제
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표3에서 규정하며
 천재지변 등 사유 등에 대한 전액 반환사유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- 조례안 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센터의 명칭·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, 허가사항을 변경(취소·해지를 포함한다)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취소·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(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)해야 한다. 다만,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다.

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개모집한다”를 “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

항”으로, “위탁운영자(이 조례에서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를 “수탁자”로 한다.
별표를 삭제하고,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, 별
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어울림 체육센터 설치 및
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
본다.

제3조(적용례) ① 이 조례의 시행 후 센터에 부속(附屬)된 어울림 체육
센터(이하 “어울림 체육센터”라 한다)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제11조제
1항 및 제17조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를 위탁 운영중인 수탁자의
위탁업무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해당 위탁
업무에 이를 추가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어울림 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은 제11조제3항에도
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과 함께 만료된다.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
다.

[별표 1]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시설(제4조제2항 관련)

시설명	세부시설	면적	위치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	○ 복지센터 -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프로그램실, 창고 등	1,426.78m ²	평창군 진부면 진별1길 144-19
	○ 어울림 체육센터 - 경기장, 다목적실, 주방 등	498.99m ²	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